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천일염 인증품 구매실적 공표, 소금의 날 지정,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구매실적 제출·공표	4
2. 소금의 날 지정	9
3. 소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4.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16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7. 9.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천일염 제조업

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나.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등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구매실적 제출·공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우수천일염 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그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집단급식시설이 제1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소금산업 진흥법」(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 제1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¹⁾ 및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²⁾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에서 “우수천일염등”이라 함)의 구매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통해 우수천일염등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법률에 따른 표준규격 및 우수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소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우수천일염등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없고, 해양수산부에서 우선구매를 요청한 건수도 3건뿐으로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은 실적 공표를 통해 우수천일염등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유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생략)

2)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이하 조문 생략)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법 제33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천일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생산방식, 생산시기, 환경 및 날씨 등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여 표준규격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표준규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경우 인증을 받은 업체가 2024년 기준 3곳³⁾이고 생산량도 전체 천일염 생산량 중 0.6%인 1,350톤⁴⁾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매실적 제출·공표를 통해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과 별개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측면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법률에서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우선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상기관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구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구매실적 제출·공표를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 촉진(중증장

3) 호성염전, 산원염전, 순꽃염전

4) 약 1,350톤 = 호성염전 800톤, 산원염전 150톤, 순꽃염전 400톤

애인생산물)이나 환경오염 방지(녹색제품), 중소기업 육성·보호(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와 같이 우선구매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품목을 위주로 구매실적 공표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둔 입법례 중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우수천일염등의 경우 다른 수산물과 달리 구매실적 제출·공표를 통해 우선구매를 촉진할 만한 사회적 요구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논의·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수산물 대상 우선구매 규정 입법례]

구 분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구매실적 제출·공표	비고
갯벌법 ⁵⁾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수산업 관련 단체	X	우선구매 기관·단체에 재정지원 등 가능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품질인증을 받은 김, 김가공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X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⁶⁾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X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⁷⁾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 식품, 유기식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국·공립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각 군 부대 및 기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농어업관련 단체 등	X	우선구매 기관·단체에 재정지원 등 가능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수산업 관련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1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거나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우수표시품, 지리적표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농어업 관련 단체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소금의 날 지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금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의2(소금의 날) 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 조례⁸⁾를 통해 같은 날을 천일염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해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대국민 홍보 및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8) 「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신안군조례)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는 형태가 있고,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형태가 있는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등 기념일 지정 및 지정불가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현재 정부 주관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5개와 개별 법률에 따른 135개가 있고, 이 중 식품과 관련된 기념일은 ‘김치의 날’ 1개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지정기준】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기념일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등에만 국한될 때에는 정부기념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김 산업의 경우 ‘김의 날’을 법정기념일이 아닌 생산자단체에서 기념하고 있는 점⁹⁾ 등을 고려할 때, 소금의 날도 법률로 지정하기보다는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9) 김산업의 경우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김의 날은 생산자단체에서 기념하고 있다는 설명임.

3. 소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에 소금 제조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 컨설팅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고, 컨설팅 실시기관 지정 현황 및 활동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u>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u>
2. ~ 4. (생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 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금사업자의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금사업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소금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가능 항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11년 동 제도 도입 이후 2014년에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컨설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던 것 외에는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컨설팅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금의 품질향상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조기술 혁신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소금 제조기술 개발에 관한 컨설팅 실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금사업자 대상 컨설팅기관 지정 현황]

등록년도 (해지연도)	업체명	선정 사유	컨설팅 내용	투입예산
2014년 (2014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통한 선정	소금사업자경영 현황 진단 및 산지 조직 활성화 등	9,4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개정안은 소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컨설팅 실시기관 지정현황 및 활동실적 공표를 통해 컨설팅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금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소금은 2차 가공 시 부가가치가 원염 대비 약 21배까지 증가하고 기능성 물질 첨가 등으로 프리미엄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소금 수출량이 정체·감소 중¹⁰⁾인 점을 고려해 해외 수요 맞춤형 소금 가공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컨설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상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조기술

10) 소금 수출량(천톤): ('18) 1.9, ('19) 2.6, ('20) 2.6, ('21) 0.6, ('22) 0.9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고,

현재 컨설팅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컨설팅 실시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그동안 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입법적 논의와 별개로 제도 집행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국가가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① 국가는 천일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의 기준이 되는 생산비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산비 결정 기준·절차 및 국회 제출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소금을 포함한 농수산물에는 공산품과 달리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의 조절이 어려운데 비해 가격 변동성은 높은 편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소금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태풍의 증가, 저염식단 확산에 따른 소비감소, 태양광발전 등 업종전환에 따른 염전면적 감소¹¹⁾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연도별로 생산량 및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 연도별 천일염 생산 및 가격 현황]

(단위 : 톤, 원/kg,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생산량 ¹⁾	303,510	323,470	308,884	308,943	282,590	261,970	176,247	280,876	260,616	242,050
산지가격 ²⁾	275	230	198	159	143	164	314	669	802	1,052
생산액 ³⁾	835	782	640	491	404	430	553	1,879	2,101	2,546

*주 1) 생산량 출처: 염업조합

2) 산지가격 출처: 염업조합

3) 생산액은 생산량에 산지가격을 곱하여 추산

*자료: 해양수산부

- 이에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11) 염전면적(실사용)은 태양광발전 등 업종 전환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허가염전면적 : ('20) 4,074ha → ('21) 3,659ha → ('22) 3,559ha → ('23) 3,524ha

□ 이와 관련, 현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2024년 기준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하였고¹²⁾, 그 중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가격 지원 실적¹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농수산물 가격안정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2024년)]

구분	조례제정 지자체	최저가격보장 규정	예산/기금 조성
경기	4 (도조례 ×)	3	2
강원	14	13	11
충북	7 (도조례 ×)	7	7
충남	9	6	7
전북	12	12	8
전남	20	16	15
경북	14	14	11
경남	8	5	6
제주	1	1	1
총계	89	77	6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상황에서 천일염에 대하여만 국가차원의 지원규정을 마련할 경우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15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⁴⁾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그 중 최저가격보장제(차액지원)를 규정한 지자체는 77개임.

13) 최저가격 지원실적이 있는 지자체(2023 기준): 28개(광역 3, 기초 25) 764억원(누계)

- '20년 : 48억원 / '21년 : 84억원 / '22년 : 140억원 / '23년 : 106억원

* 시도(3) : 충남, 전북, 제주 / 시군(25) :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양구, 옥천, 제천, 충주, 당진, 청양, 예산, 익산, 임실, 진안, 장수, 함평, 나주, 순천, 안동, 봉화, 합천, 의령

14) 이 중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서삼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주철현의원안이 있음 ☞ [참고자료] 참조

□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 시 품질저하, 과잉생산, 가격하락 등이 발생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수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포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발의	문금주 (‘24.6)	주철현 (‘24.6)	서삼석 (‘24.7)
조항	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안 제16조의4,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신설	안 제16조의2, 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제도 명칭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대상 품목	주요 농수산물	주요 농수산물	주요 농수산물
기준 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최저가격
	평년가격, 생산비용, 물 가상승률 등 반영	평년가격, 생산비용, 물 가상승률 등 반영	생산비용 등 반영
기준 금액 결정	수산물최저가격보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 원회 심의·의결	대통령령으로 위임
시행 주체	국가	국가	국가
위원회 구성	(농식품부) 농산물최저 가격보장심의위원회 (해수부) 수산물최저가 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농식품부) 농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 (해수부) 수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 설치	대통령령으로 위임
기타 특이 사항	①농수산물 최저가격보 장제 실시를 위한 중 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②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 과를 소관 상임위 보고 ③농안기금 지출목록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 장제 추가		①국가는 별도로 최저 가격보장제를 실시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